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현황과 정책을 위한 제언



구 돈 회 사무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원산지표시제 도입 배경

WTO 출범 이후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농축산물수입량은 매년 늘어나고 품목도 다양해져 국내시장의 수입 농축산물 유통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생산한 좋은 품질의 농축산물을 선호하고 있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격경쟁 면에서 국산농축산물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소비자들은 외국산인지 국산인지를 눈으로 보고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값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면 소비자는 값싼 수입농축산물을 국내산가격으로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며, 수입산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국내산의 수요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어 국내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는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수입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산과 수입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는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구매할 때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품질 좋은 국내 농축산물을 제값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원산지표시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2 원산지표시관리 제도의 주 요내용

원산지표시 관리를 위해서 정부는

단속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이 소요되고, 판매업체에서는 표시하는데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소비자와 국내 농업인을 위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며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내 농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이가 크며 소비자와 생산자를 위하여 표시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포함한 수입 농축산물 176개 품목과 국내산 농축산물 145개 품목, 농축산가공품 121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442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관리를 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기준은 국산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생산한 시·군·명」을, 수입 농축산물은 「생산국가명」을, 가공품은 「원료 농축산물의 생산국가명」을 <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진열대, 스티커 또는 풋말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축산물 판매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1> 원산지 표시기준

방법	진열대	스티커	용기	판매장소	풋말
크기 (가로×세로×높이)	이상 7×5cm	이상 3×2cm	이상 10×5cm	이상 15×10cm	이상 10×5×5cm

* 인쇄 : 포장표면적 50㎠ 이상은 12포인트 이상,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

또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수많은 대상업소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원산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98. 9월부터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

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특사경을 확대하여 2003년 현재 383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사경은 농축산물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입건 후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은 물론,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집행,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과 집행 등을 통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상습적인 허위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대상업소 : ('94)57천개소 → ('98)339천개소 → ('00)366천개소 → ('03)386천개소
- 특사경 : ('98)192명 → ('00)325명 → ('02)378명 → ('03)383명

3.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실태 및 단속현황

가. 원산지표시 실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1994년부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협동으로 매년 원산지표시 이행율을 조사한 결과 1994년도 62.2%에서 2003년도에는 96.1%로 표시 이행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대형유통업체가 99.8%로 가장 높은 반면 노점상이 83.7%로 가장 낮고, 종류별로는 가공품이 98.0%로 가장 높은 반면 수입농산물이 95.6%로 가장 낮고, 품목별로는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가 98.7%로 가장 높은 반면 채소류가 93.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시 이행율 : ('94)62.2% → ('96)83.0% → ('00)94.9% → ('03)96.1%

나. 농축산물원산지 단속현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2인 1조로 전국적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석이나 설 등 취약시기 또는 수입급증품목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전년대비 수입증가율, 수입량, 국내외 가격차 등을 비교 분석하여 단속품목의 우선순위가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자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 단속반수 : ('94)153개반 → ('98)320개반
→ ('00)343개반 → ('03)251개반(50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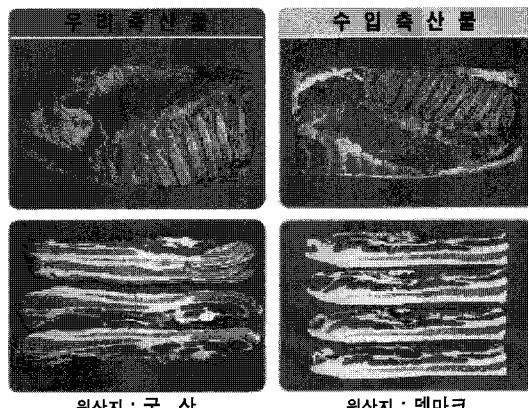
단속과정은 수집한 정보 등을 통해 단속대상업소를 선정하거나 단속반이 판매업소를 방문해서 원산지 표시여부와 허위표시여부를 관능적인 방법으로 식별하여 확인한 후, 의심이 되면 시료를 채취하는 한편, 각종 구입 및 판매장을 추적 조사하게 된다.

*관능적인 원산지식별방법이란? 사람의 5관(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에 의한 식별방법으로 2003년 현재 돼지고기를 포함 168개 품목을 개발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국내산은 수입산과 달리 지방층이 두껍고 갈비뼈를 제거한 면이 고르지 않으며, 선명한 붉은 색을 띠고, 구우면 수입산은 지방이 흰색으로 응고되지만 국내산은 지방이 액체상태로 분리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등심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수입산보다 크기가 크다.

관능에 의한 식별결과 의심나서 채취한 시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하 시험연구소로 보내 근적외선 분석법, DNA분석법 등 첨단기법에 의한 과학적인 검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구입처와 판매처에 대해 정밀 서류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

돼지고기(삼겹살)



원산지 : 국 산

원산지 : 덴마크

하여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다.

이와 같이 식별방법이 개발되어 있어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소비자가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워 일부 농축산물 판매업소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진열장에는 국산이라고 정확하게 표시해 놓고 판매할 때는 보관하고 있는 수입산을 꺼내주거나,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할 의도로 포장재를 바꾸거나, 특정업체의 브랜드를 악용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대량소비처에 공급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 위반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둔갑 판매 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는 2003. 1~11월까지 6,087개소로 총 판매업소 386천개소의 1.6%에 해당되나, 이중 돼지고기 위반업소는 868개소로 총 식육판매업소 28천개소의 3.1%에 해당되며, 총 442개 품목(6,087개소) 중 돼지고기 1개 품목(868개소)이 차지하는 위반업소 비율은 14.3%로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타 품목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1) '02. 5. 2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00 정육점을 불시 단속하여,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덴마크, 헝가리, 프랑스산) 2.8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중인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후 검찰에 송치하여 벌금형 처분

2) '03년 4.1~7.2까지 총 405회에 걸쳐 뉴질랜드, 미국, 호주산 쇠고기 4,811kg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일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 광주광역시 소재 E업체 대표와 '03년 2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호주산 쇠고기 5,947kg과 쇠갈비 등 1,218kg, 헝가리산 돼지삼겹살 3,562kg과 돼지갈비 등 3,545kg 등 합계 14,272kg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학교급식용 등으로 납품한 H업체 대표를 구속수사하여 검찰에 송치

4.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려면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내소비자들은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소비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값싼 수입산 보다는 국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로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 모두가 각계의 위치에서 농축산물 부정유통 방지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한정된 인력으로 386천개 판매업소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설, 추석 등 유통성수기 또는 원산지단속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발동하여 수입량 급증으로 둔갑판

매 가능성이 높은 취약품목에 대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단속활동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단속기법 개발과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적발하는 등 사법경찰권의 강력한 행사가 필요하며, 단속결과에 대하여는 언론 보도를 추진하여 부정유통 예방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고,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전국어디서나 1588-8112)와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 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제도 운용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부정유통 신고의 활성화를 통한 범국민적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자는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농축산업이 무너진다는 각오로 그동안 쌓아온 소비자신뢰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요구되며, 개방화시대에 수입농축산물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생산 및 판매전략이 필요하고 소비자는 원산지표시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되, 표시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즉시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소비자 모두가 감시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고, 판매업자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투명한 거래로 정상적인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차원 높은 상도의를 지켜나가려는 의지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둔갑시켜 판매할 경우 반드시 단속되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원산지표시제도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양돈**